

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91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0. 06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0. 12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10. 18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이유

고성군 자연휴양림 구성에 따라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등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3조)

나. 이용시간, 휴관일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안 제5조)

다. 시설사용의 예약,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안 제7조)

라. 시설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안 제9조)

마.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바.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

2)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9조의9

나. 예산조치: 2024년 당초예산 확보 계획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3984(2023. 9. 2.)]

- 물가조정심위원회: 해당사항 없음[경제기업과-25918(2023. 5. 17.)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388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08. 30. ~ 2023. 09. 19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
5) 비용추계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, 자연휴양림의 이용 시간, 시설 사용료 및 감면, 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조)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, 사용료 징수를 위한 상위법령 위임조항 및 제정 취지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(안 제2조 ~ 제3조)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4조 ~ 제10조) 이용시간 및 휴관일, 예약, 시설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, 사용료 반환,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, 집행기관에서 정한 시설사용료 및 감면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11조)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, 상위법령인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한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시설 사용료 및 감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- 다만,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의 운영시간, 사용료 및 감면사항 등에 대한 결정 및 산정기준은 물론 향후 원활한 개장을 위한 준비사항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10. 18. 원안가결 함.